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49
----------	-------

발의연월일 : 2026. 3. 17.

발 의 자 : 김승원 · 허 영 · 김남근
박상혁 · 민병덕 · 김용만
강준현 · 이정문 · 김 윤
김 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제3항 중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다음 각 호”로, “1억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를 “제2항제1호”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같은 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1.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생략) <u><신 설></u></p> <p>② (생략)</p> <p>제35조(과징금) ①·② (생략)</p>	<p>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35조(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p>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
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생
략)

③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8조제3
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
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
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④~⑥ (생략)

제41조(과태료)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 제81조
----- 부터 제85조까지-----

-----.

④~⑥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
---- 다음 각 호-----
----- 1억원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출한 자

5.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② ----- 제1호-----
----- 제2호부터 제4호-----

-----.

1.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 설>

③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④ ~ ⑥ (생략)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③ ----- 제2항 제1호-----
-----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
----- 제1항제2호-----
-----.

④ ~ ⑥ (현행과 같음)